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영주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7. 4.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문화경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관내 ▽▽면 ▽▽리 000번지 일원에 △△△△ 문화경관 조성사업을 '13.12.24. ☆☆☆☆(주) 대표 ◎◎◎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3.12.31.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표] △△△△ 문화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일)	시 공 자	비 고
△△△△ 문화경관 조성사업	▽▽면 ▽▽리 000 일원	지상2층 연면적 3,796㎡ (대지 8,614㎡)	0,000백만원	'13. 12. 31 ~ '18. 3. 2 ('13. 12. 24)	☆☆☆☆(주) 대표 ◎◎◎	

단지 내 신설도로변 경사지는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자연석 쌓기가 적정함에도 고가의 산석옹벽 쌓기를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0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있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노후도로에서 표면접착력이 떨어져 미끄러울 경우 필요한 시설로서

신설도로에는 불필요 함에도 사업부지 내 신설도로 000㎡에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가설방음벽 00경간(000m)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상 불필요하여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 00,000천원에 대하여 정산조치 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17.3.31.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관내 ♂♂면 ♂♂리 000번지 일원에 ○○○○
○○○○ 건립공사를 '16.11.16. UUUU(주) 대표 ☆☆☆와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
하고 '16.11.23.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표】 ○○○○○○○○ 건립공사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일)	시 공 자	비 고
○○○○○○○○ 건 립 공 사	♂♂면 ♂♂리 000 일원	지하2, 지상1층 연면적 1,762㎡	0,000백만원	'16. 11. 23 ~ '17. 11. 17. ('16. 11. 16)	UUUU(주) 대표 ☆☆☆	

강관동바리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설치면적 000㎡에 고가의 시스템동바리를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자연석 쌓기 000㎡에 설치 인건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거푸집은 일반

건축물을 기준한 먹매김 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고가의 주택기준 품을 적용 설치 인건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건축물 0,000㎡ 중 일부분인 000㎡는 목조부분 임에도 건축물 전체에 대해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한 현장정리비용을 적용하여 공사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가설울타리 00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상 불필요하여 설치되지 않았 음에도 공사비 0,000천원에 대하여 정산조치 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7.3.31.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개체공사 외 2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ㄱㄱ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ㄱㄱ과에서는 '☆☆☆ 개체공사'를 2016. 5. 4. (주)《《《《《 ○○○'와 계약하고 2016. 5. 11. 착공하여 2019. 4. 25.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총 3건의 교량개체 및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지방도935호) 개체공사		00	도로 L=900m 교량 L=24m	0,000	2016. 5. 4.	2016. 5.11. ~ 2019. 4.25.	(주)《《《《《 ¥¥¥	진도 3%
000~000도로 (시도00호)확포장공사	00	00	도로 L=2,743m	0,000	2015. 6.20.	2015. 6.23. ~ 2018. 6.21.	(주)㉸㉸㉸ ¥¥¥	진도 30%
000 진입도로 (농로000호)확포장공사	00	00	도로 L=1,610m	000	2015. 9. 4.	2015. 9.11. ~ 2018. 9. 4.	㉸㉸㉸㉸㉸(주) ¥¥¥	진도 20%

1. 혼합골재 자재 구매 부적정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스콘 포장공사에 따른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혼합골재는 관내 업체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관급자재로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에도 사급자재로 구매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공사비 00,000천원(☆☆☆ 개체 00,000, 000~000간 도로 00,000, 000 진입도로 00,000, 제 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한 사실이 있다.

2. 운반기계의 유류대 미공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 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 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개체공사의 경우 순성토 작업에 따른 덤프트럭 24Ton의 적재 시간이 14.28분으로 10분을 초과하므로 설계 전 미리 유류대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다.

3. 각종 공사비 과다계상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 개체공사의 경우 기존 구조물깨기 중 들어내기 공종과 폐기물 상차를 중복 계상함으로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고,

000~000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발파암 면고르기는 브레이카로 시공시 면 고르기품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암 절취를 백호우+브레이카로 작업하면서 불필요한 비탈면 고르기를 반영하여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인부임 과다 적용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굴림석 쌓기의 경우에도 인부임을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000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보차도경계석과 도로경계석 설치에 따른 자재대를 관급자재대에 반영하고도 단가산출서 자재대에 중복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3건의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〇시 〇〇과에서는 ‘《《 《《~《《《《 도로확포장공사’를 2014. 3. 20. 〇〇〇〇〇(주) 〇〇〇과 계약하고 2014. 3. 26. 착공하여 2018. 12. 31.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총 3건의 도로확포장 및 교량개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 《《~《《《《 도로확포장공사	00	00	도로 L=1,800m	0,000	2014. 3.20.	2014. 3.26. ~ 2018.12.31.	〇〇〇〇〇〇(주) 〇〇〇	진도 35%
√√√ 개체공사	00	00	교량 L=47m 도로 L=250m	000	2016. 9. 9	2016. 9.19. ~ 2018. 9.18.	(주)〇〇〇〇 〇〇〇	진도 25%
》》》 개체공사	00	00	교량 L=169m 도로 L=400m	0,000	2014. 12. 3.	2014.12. 3. ~ 2017.12.30.	〇〇〇〇 〇〇〇	진도 75%

1.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미적용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공사 설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은 재료 및 환경조건이 국내 특성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설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환경과 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시험시공 등을 거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2012.)」이 품질도 우수하고 공사비도 저렴하며 도로 기능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동상의 피해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도로 동상 방지층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동상 방지층 설계지침(2012. 8.)」을 제정하였다 .

따라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및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으로 포장 단면을 검토하여 도로 공사가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의무) 및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자는 도로, 하수관거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보조기충용 등의 용도에 따라 적용 기간별로 의무사용량에 해당하는 골재 소요량의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에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보조기충용 등의 용도로 의무사용량에 해당하는 골재 소요량 이상을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3개월)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〇〇시 〇〇과에서는 √√√ 개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개선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기존의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였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에 해당하는 골재 소요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혼합골재는 관내 업체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관급자재로 구매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공사비 00,000천원(《《 《《《《《《 00,000, √√√ 00,000, 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한 사실이 있다.

2. 운반기계의 유류대 미공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 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 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순성토 작업에 따른 덤프트럭 15Ton의 적재시간이 13.52분으로 10분을 초과하므로 설계 전 미리 유류대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아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3. 철근콘크리트깨기에 발생하는 고철비 미공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따른 철근 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하여 50kg/m³으로 수량을 산출하여 공사원가에 공제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깨기에 발생하는 철근 고철비를 공제처리하지 않고 원가를 산정하여 공사비 0,000천원(√√√ 0,000, ≫≫≫ 0,000, 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3건의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 ㅍㅍㅍㅍ ㅍㅍㅍ 확장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상 상 상 상 상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상 상 상 상 상에서는 ‘○○시 ㅍㅍㅍㅍ ㅍㅍㅍ 확장시설 설치공사’를 2013. 4. 23. 우우우우우우(주) ◇◇◇◇’과 계약하고 2013. 4. 24. 착공하여 2017. 12. 11.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1. 구조물깨기 과다계상

위 공사의 당초 통합정수장내 기존 구조물 철거(무근 및 철근콘크리트깨기 710.5m³) 작업은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로 일부 철거후 여과지를 신설토록 계획

되어 있었으나, 통합정수장 부지 확장으로 여과지 신설 위치가 조정됨에 따라 기존 구조물 철거를 대형 브레이커로 작업방법을 변경함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2.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 등 6개 정산항목은 [표]와 같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표]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규정

정 산 항 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6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위 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 등 6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0,000천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그그그
내 용

○○시 그그그에서는 아래[표1] 사업현황과 같이 2014. 12. 3.(주)▽▽▽▽▽
∫ ∫ ∫ 과 공사계약(0,000,000천원)을 맺고, 2014. 12. 10. 착공하여 2017. 12. 8. 준공
예정으로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업체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등				
★★★ 생태하천 복원사업		00	하천정비 L=1.5km	0,000,000	0,000,000	0,000,000	2014. 12.03	2014.12.10 ~2017.12.08	(주)▽▽▽▽▽ ∫ ∫ ∫	진도 50%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
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원가심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시·군 계약심사 대상사업이고,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그그그에서는 아래[표2] 설계변경 현황과 같이 ★★★ 생태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
되는데도 설계변경 계약원가심사를 미이행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표2]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사업기간 (계약일)	공사업체	계약금액					비고
			당초	1회 변경 (15.12.29.)	2회 변경 (16.5.10.)	3회 변경 (16.12.21.)	증감	
★★★ 생태하천복원사업	14.12.10. ~17.12.08. (14.12.03.)	(주)▽▽▽▽▽ ∫ ∫ ∫	0,000	0,000	0,000	0,000	증000 (00.0%)	

2. 공사비 과다 계상

사업구간은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보고서(국토교통부, 2014.7)상 복원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장 표3[하천공간관리의 구역 구분]과 같이 훼손된 하천
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제한된 시설만 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하천 관리를 위한 제방도로
포장 재료는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함이 타당함에도 고가인 황토콘크리트 포장을
계획하여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제방 보조기층용 쇄석은
관내 업체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관급구매하면 더 경제
적임에도 사급자재로 계획하여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또한, 하천구간 구조물 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물막이 톤마대 쌓기를 설계수량(983㎡) 보다 494㎡ 과소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고 사업비 00,000천원 (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하였고,

[표3] 하천공간관리의 구역 구분

지구 구분	구역 구분	도입가능시설	시설도입 가능면적비
보전	-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구역이며, 사람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배제	-
복원	-	훼손된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제한된 시설만 도입이 가능하며, 천수시설과 같이 사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배제	-
천수	중소 도시	인공정비구역과 같이 인공적 시설이 중심이 되지만, 특히 하천의 자연환경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 위락시설, 문화시설도 고려	20%미만
	대도시	운동시설, 위락시설, <u>수상시설</u> , 편익시설 등 인공적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구역	30%미만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따른 철근 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상하여 50kg/㎡로 수량을 산출하여 공사원가에 공제(-)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존 구조물 깨기에 발생하는 철근 43ton 고철비를 공제처리(-)하지 않고 원가를 산정하여 사업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되게 하였다.

그 결과 ○○시 ㄱㄱㄱ에서는 설계변경 원가심사를 미이행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고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아래[표] 사업현황과 같이 2016. 12. 29. ∞∞∞∞(주) ∴ ∴ ∴과 공사계약(0,000,000천원)을 맺고, 2017. 1. 5. 착공하여 2018. 12. 25. 준공 예정으로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업체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등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	≡≡	하수관로 L=3.5km	0,000,000	0,000,000	000,000	2016. 12.29	2017.01.05 ~2018.12.25	∞∞∞∞(주) ∴ ∴ ∴	진도 5%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수밀시험 일괄 발주 부적정

환경부(하수67712-549호, 2003.05.22.)에서는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 공사에 CCTV검사 및 수밀시험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 하였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하수관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밀시험을 분리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공사와 일괄 발주하여 시험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도급내역에 과다 계상 하였다.

2. 가정내 배수설비 관련

가정내 배수설비 계획시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경제적인 노선으로 선정하여 시공 하여야 함에도, 화장실 및 부엌 오수관로를 터파기 후 동시에 일괄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을 각각의 노선으로 계획하여 터파기 물량 등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3. 차선도색 관련

「경상북도 설계실무 요령」에 의하면 차선도색의 경우 지방지역은 페인트식, 일교통량 10,000대 이상인 시가지 지역은 용착식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교통량이 10,000대 미만인 지방지역에 고가의 용착식 차선도색을 적용하여 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그 결과 ○○시 ▽▽▽▽에서는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 주 시

관 계 부 서 ㄱㄱ과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와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와 ▽▽▽▽▽에서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는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공사추진상황과 매년도 사업시행계획, 공정계획표, 연도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 ㄱㄱ과에서는 [표] 위수탁사업 정산 현황과 같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대행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함에도 00백만원을 반납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위수탁사업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회계연도	사 업 비	정산유무	미반납 이자	비고
계	4건		0,000,000		00,000	
1	000소재지정비사업	2016	0,000,000	○	00,000	
2	0000단위종합정비사업	2016	000,000	○	00,000	
3	0000단위종합정비사업	2016	0,000,000	○	00,000	
4	00000 농촌마을리모델링사업	2016	-	○	0,000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① 대행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00,000천원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